

2017학년도 제6차
<제333차 이사회 회의록>

2018. 2. 6.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7학년도 제6차

<제33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8. 2. 6(화) 07:30 ~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8년 1월 29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총장 박형주, 의무부총장 유희석, 교무처장 장우진, 연구정보처장 최정주,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예산팀장 조정숙, 기획팀장 김의섭 (7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기획처장 류지호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있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최정주 연구정보처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
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33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7-171호(2018.1.29)로 통
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재임용·승진 임용 동의
(안), 의안 제2호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3호 2017학년도 아
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4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
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5호 정관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7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8호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10호 아주대
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의안 제11호 2018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95
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의안 제12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
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13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
안 제14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및 명예퇴직 동의(안), 의
안 제15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16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 제17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
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18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9호 아주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의안 제20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21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의안 제22호 2017학년도 법
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23호 2018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
인(안), 의안 제24호 2018학년도 상근임원 보수책정 승인(안) 등 24개의 안건을 상정하였
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받기.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재임용·승진임용 내용을 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명 드리겠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3명으로 본교 재임용 기준인 업적평가 평균평점 3.0 이상, 현직급에서 발표된 연구실적 100% 이상을 충족하여 제청하였습니다. 승진 임용 대상자는 1명으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을 동의 요청드립니다. 임용 제청자의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 및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해당 교원의 이력과 연구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임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 용 기 간
자동차계열	유동주	부교수	2018.3.1. ~ 2024.2.28.
자동차계열	조경환	부교수	2018.3.1. ~ 2020.2.28.
자동차계열	길현성	조교수	2018.3.1. ~ 2021.2.28.

- 이상 3명 -

나.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 용 기 간
자동차계열	장현탁	교 수	2018.3.1. ~ 정년

- 이상 1명 -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불용자산은 총 758점, 취득가액 576,794,913원으로 폐기대상 자산은 실험실습기기류,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으로 장기간 사용한 기계기구와 강의실 개선사업으로 교체된 집기비품들로 노후와 파손에 따라 불용 처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들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제1차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운영수지가 3.8억으로 1차 추경 대비 0.1억 감소하였으나, 자산매입 0.3억 감소 및 2017학년도 결산 전기이월자금 2.8억 증가 반영으로 자금이 약 3억 증가하여 기금적립 1.6억 및 차기이월자금 1.4억이 증가하는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기금적립 및 차기이월자금의 합계가 6.2억으로 아주자동차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연간 건물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추경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영현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과 목	1차 추경	증(감)	본예산	과 목	1차 추경	증(감)	본예산
운 영 수 입	95.6	-4.2	99.8	운 영 지 출	91.8	-4.1	95.9
등록금	61.0	-2.1	63.1	보수	36.7	-0.8	37.5
전입금	2.6	-0.6	3.2	관리운영비	21.5	-1.3	22.8
기부금	1.0	0.2	0.8	연구비	0.1	-	0.1
국고보조금	20.3	-1.8	22.1	장학금	30.4	-1.4	31.8
교육부대수입	9.5	-0.0	9.5	기타학생경비	2.3	-0.4	2.7
교육외수입	1.2	0.1	1.1	교육외비용	0.6	0.0	0.6
				예비비	0.2	-0.2	0.4
자산매각수입	-	-		자산매입비	0.9	-0.3	1.2
				기금적립	4.8	1.6	3.2
고정부채입금	0.2	-	0.2	고정부채상환	-	-	-
전기이월자금	3.1	2.8	0.3	차기이월자금	1.4	1.4	0.0
합 계	98.9	-1.4	100.3	합 계	98.9	-1.4	100.3

제 4 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8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아주자동차대학 보수가 2013학년도 7.2%, 2014학년도~2017학년도 매년 4%씩 인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2018학년도에도 4% 인상 반영하였으나, 재원인 등록금수입이 입학금 감소 및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입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하여 4.9% 증가될 것으로 예산 반영되어 있어 과대계상이 우려되기에 2018학년도 본예산에는 보수를 4% 인상 반영하지만 등록금수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종전처럼 우선 2%만 지급하고 나머지 2%는 등록금수입의 목표 달성 상황을 보고 향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성호

이사

이영현

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과 목	2018	증(감)	2017	과 목	2018	증(감)	2017
운 영 수 입	101.2	5.6	95.6	운 영 지 출	98.3	6.5	91.8
등 록 금	64.0	3.0	61.0	보 수	38.7	2.0	36.7
전 입 금	3.3	0.7	2.6	관 리 운 영 비	23.8	2.3	21.5
기 부 금	0.8	-0.2	1.0	연 구 비	0.1	-	0.1
국 고 보 조 금	22.4	2.1	20.3	장 학 금	32.5	2.1	30.4
교육부대수입	9.5	-	9.5	기 타 학 생 경 비	2.2	-0.1	2.3
교육외수입	1.2	0.0	1.2	교 육 외 비 용	0.6	-	0.6
				예 비 비	0.4	0.2	0.2
자 산 매 각 수 입	-	-	-	자 산 매 입 비	1.1	0.2	0.9
기 금 인 출	0.1	0.1	-	기 금 적 립	2.5	-2.3	4.8
고 정 부 채 입 금	-	-0.2	0.2	고 정 부 채 상 환	-	-	-
전 기 이 월 자 금	1.4	-1.7	3.1	차 기 이 월 자 금	0.8	-0.6	1.4
합 계	102.7	3.8	98.9	합 계	102.7	3.8	98.9

제 5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직원의 직군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 사유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간호인력 유지를 위한 병동간호등급 상향 조정 필요성,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수가신설 및 법적사항 이행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내 과 수련기간 단축의 대체 수요, 신생아집중치료실 등급 상향 조정의 수요 반영 및 향후 4년간 의료수입 목표연동, 진료관련 인력, 안정적 간호관리 등급 유지를 위하여 정원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 성 : 정원 조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 충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이사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u>별표</u> 와 같다.		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u>별표</u> 와 같다.	
< 별 표 > 직원 정원		< 별 표 > 직원 정원	
법 인	11명	법 인	11명
아주대학교	250명	아주대학교	250명
의료원		의료원	
<u>총 계</u>	<u>2,802명</u>	<u>총 계</u>	<u>3,079명</u>
<u>일반직</u>	<u>205명</u>	<u>일반직</u>	<u>205명</u>
2급	1명	2급	1명
3급	4명	3급	4명
<u>4급</u>	<u>18명</u>	<u>4급</u>	<u>20명</u>
5급	30명	5급	30명
<u>6급</u>	<u>96명</u>	<u>6급</u>	<u>94명</u>
<u>7급</u>	<u>33명</u>	<u>7급</u>	<u>45명</u>
<u>8급</u>	<u>23명</u>	<u>8급</u>	<u>11명</u>
<u>기술직</u>	<u>2,015명</u>	<u>기술직</u>	<u>2,292명</u>
2급	1명	2급	1명
3급	3명	3급	3명
<u>4급</u>	<u>25명</u>	<u>4급</u>	<u>27명</u>
<u>5급</u>	<u>125명</u>	<u>5급</u>	<u>147명</u>
6급	624명	6급	624명
<u>7급</u>	<u>815명</u>	<u>7급</u>	<u>979명</u>
<u>8급</u>	<u>422명</u>	<u>8급</u>	<u>511명</u>
<u>기능직 I</u>	<u>32명</u>	<u>기능직 I</u>	<u>30명</u>
6등급	20명	6등급	20명
<u>7등급</u>	<u>8명</u>	<u>7등급</u>	<u>6명</u>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8등급	4명	8등급	4명
9등급	0명	9등급	0명
<u>기능직Ⅱ</u>	<u>110명</u>	<u>기능직Ⅱ</u>	<u>102명</u>
<u>7등급</u>	<u>106명</u>	<u>7등급</u>	<u>102명</u>
<u>8등급</u>	<u>4명</u>	<u>8등급</u>	<u>0명</u>
9등급	0명	9등급	0명
<u>별정직</u>	<u>440명</u>	<u>별정직</u>	<u>450명</u>
<u>5급</u>	<u>120명</u>	<u>5급</u>	<u>130명</u>
6급	320명	6급	320명
아주자동차대학	18명	아주자동차대학	18명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6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은 기관연구윤리심의실의 부서 명칭을 임상연구윤리센터로 변경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비뇨기과 및 비뇨기과학교실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교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영현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1조(학과 및 각 교실) ① 의과대학에는 의학과를, 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를 둔다.</p> <p>② 의학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약리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정보학과, 뇌과학과, 소화기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 종양혈액내과학교실, 감염내과학교실,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핵의학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응급의학과학교실, 직업환경의학교실, 가정의학과학교실, 치과학교실, 의학유전학과를 둔다.</p> <p><이하생략></p>	<p>제11조(학과 및 각 교실)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학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약리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정보학과, 뇌과학과, 소화기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 종양혈액내과학교실, 감염내과학교실,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핵의학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응급의학과학교실, 직업환경의학교실, 가정의학과학교실, 치과학교실, 의학유전학과를 둔다.</p> <p><이하생략></p>
<p>제14조(부속병원) ① 내지 ⑤ <생략></p> <p>⑥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삽입>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14조(부속병원) ①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⑥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임상연구윤리센터,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삭제>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임상연구윤리센터,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15조(진료부) ① 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암센터장, 내과부장, 외과부장을 둔다.</p>	<p>제15조(진료부) ①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② 진료부에는 진료부서로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u>비뇨기과</u>,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둔다. <이하생략></p>	<p>② 진료부에는 진료부서로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u>비뇨의학과</u>,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둔다. <이하생략></p>
	<p>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제 7 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인 초빙교수의 임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초빙교수의 자격, 임용 및 직무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좌교수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있는 인사로서 외부기금 또는 특별채원으로 임용된 교원 2. 대우교수 : 학생교육, 연구활동, 진료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 3. 강의교수 :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4. 연구교수 : 특정연구과제 수행, 연구소 운영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진료교수 : 임상진료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6. 겸임교수 :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산업체의 전문가로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7. 자문교수 : 의료원 외의 기관에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교육, 연구 및 진료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8. 명예교수 : 의료원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연구, 진료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교원 <p><신설></p> <p>② 내지 ③ <생략></p>	<p>제2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8. <현행과 같음> <p>9. 초빙교수 : 학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 10 장 초빙교수</p>
<p><신설></p>	<p>제29조(자격) 초빙교수는 국내·외로 연구업적 및 연구 활동이 매우 우수한 자 또는 사회적 저명도가 높은 외부인사로 한다.</p>
<p><신설></p>	<p>제30조(임용) ① 초빙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상행

이사

이

영현

현행	개정
	<p>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p>
<신설>	<p>제31조(직무) ① 초빙교수는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p> <p>② 초빙교수는 학기당 1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제 8 호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2017학년도 임금협상 별도 합의사항을 적용하여 군필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2조(군필수당) 직원 중 군필자에게는 별표2에서 정한 군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군필수당) 직원 중 군필자에게는 별표2에서 정한 군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9 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및 수리불가 불용 판정된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전산장비 및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4,078점, 취득 금액 6,670,123,768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길주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0 호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환자 및 보호자가 사망, 실종, 경제적 파산(무능력),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심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입원·외래 진료비 미수금 64,255,590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재무회계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대손상각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현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최 홍 : 채권 채무 시효가 소멸된 미수금으로 내용상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재무회계 건전성을 위한 대손상각 처리로 판단되기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1 호 2018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9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9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2018학년도 필수 의료장비 도입자금을 원화리스 95억원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 해당 원화리스를 다음과 같이 한도계약 하고자 합니다. 리스사는 롯데캐피탈주식회사로서 금리는 기준금리에 0.53%를 더한 2018년 1월 12일 기준 3.237%로 1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한도계약의 주요내용 및 의료기기 장비 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필수 의료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차입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9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영현

□ 원화리스 95억원 한도계약 승인 내용

구 분	계 약 조 건	비 고
리스사 계약금액 리스기간 납부방법 금리 리스형태 담보제공 종료후 처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95억원 5년 3개월 후불 기준금리 + 0.53% 금융리스 무담보 신용 무상양도	1년 단위 변동금리

제 12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배홍기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1차 추경과 의료수익은 동일한 반면 단체협상 후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의료비용이 42억 증가하여 의료이익이 42억 감소하는 예산(안)입니다. 의료수익의 변동 없이 인건비만 증가시켜 의료이익률은 5%보다 낮은 4.6%가 되었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45%를 초과한 45.1%가 됩니다. 기간 결산시까지 의료이익률 5% 이상, 인건비 비율 45%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 및 비용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박상일 : 예산 편성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7 1차추경	2017 2차추경(안)			
		예산	증감	증감률	
전기이월	378.8	378.8	-	-	
수입	의료수입	5,108.0	5,108.0	-	-
	의료외수입	255.5	252.4	-3.1	-1.2%
	기타고정부채	39.7	32.9	-6.8	-17.1%
	차입금수입	154.3	153.8	-0.5	-0.3%
	투자외기타자산수입	-	-	-	-
	기본금증가	-	-	-	-
	계	5,557.5	5,547.1	-10.4	-0.2%
지출	의료지출	4,299.7	4,338.4	38.7	0.9%
	의료외지출	178.6	180.4	1.8	1.0%
	기타고정부채	69.2	62.4	-6.8	-9.8%
	차입금상환	109.3	98.5	-10.8	-9.9%
	투자외기타자산	0.4	0.5	0.1	25.0%
	고정자산	275.9	276.4	0.5	0.2%
	전출금	498.4	497.4	-1.0	-0.2%
	예비비	50.0	5.0	-45.0	-90.0%
	계	5,481.5	5,459	-22.5	-0.4%
자금수지	76.0	88.1	12.1	15.9%	
차기이월	454.8	466.9	12.1	2.7%	

제 13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은 의료수익은 2017학년도 2차 추경 대비 307억이 증가한 5,415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의료이익은 8억이 감소한 225억, 당기순이익은 68억 감소한 5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Triple 5(일평균 외래환자 5,000명, 의료수익 5,000억, 의료이익률 5%)라는 목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8학년도에는 3.6.9.(외래환자 3% 증가, 의료수입 증가율 6% 증가, 병상가동율 90% 달성)라는 목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이익률이 5%보다 낮은 4.2%, 인건비 비율은 45%를 초과한 45.7%로 예산이 편성된 뒤 다가 2018학년도 임단협을 통한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이익률은 3.2% 수준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지 감소하고, 인건비는 46.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이익률 5% 이상을 유지해야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인건비 비율은 45% 이하를 유지해야 병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의료수익 목표 반영 및 좀 더 통제된 인건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의료수입대비 인건비율이 45.7%로 인건비 비율이 증가된 부분이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몇 년간 인력 수급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무부총장 유희석 : 동급병원들이 간호 1등급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간호 1등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시행 결정하였습니다. 첫째인 올해는 인건비에 대한 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착 되면 내년부터는 인력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김 성 진 : 인건비 증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차 추정	2018 본예산(안)			
		예산	증감	증감률	
전기이월	378.8	466.9	88.2	23.3%	
수입	의료수입	5,108.0	5,415.0	307.0	6.0%
	의료외수입	252.4	255.4	3.0	1.2%
	기타고정부채	32.9	9.6	-23.3	-70.7%
	차입금수입	153.8	95.0	-58.8	-38.2%
	투자외기타자산수입	-	-	-	-
	기본금증가	-	-	-	-
	계	5,547.1	5,775	227.9	4.1%
지출	의료지출	4,338.4	4,631.1	292.7	6.7%
	의료외지출	180.4	294.0	113.6	63.0%
	기타고정부채	62.4	9.6	-52.8	-84.6%
	차입금상환	98.5	112.9	14.4	14.6%
	투자외기타자산	0.5	0.3	-0.2	-40.0%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고정자산	276.4	206.6	-69.8	-25.2%
전출금	497.4	560.8	63.4	12.7%
예비비	5.0	50.0	45.0	900.0%
계	5,459	5,865.3	406.3	7.4%
자금수지	88.1	-90.3	-178.4	-202.5%
차기이월	466.9	376.6	-90.3	-19.3%

제 14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및 명예퇴직 동의(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 임용 및 명예퇴직 동의(안) 받이.
교무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1명이며, 재임용 대상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 및 특별임용교원으로 대우부교수 1명과 직급변경으로 대우교수 2명, 대우부교수 3명을 임용 제청하였습니다. 직급변경 재임용 사유는 그간 일괄적으로 대우조교수 직급으로 제청하였으나 2018학년도부터 국방전문성 경력을 반영한 직급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적용하여 재임용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임용대상자는 총 18명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9명,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이 9명입니다. 각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별첨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전임교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 임용대상자는 총 17명이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이 7명,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이 10명입니다. 교수 승진 임용 제청된 10명은 정년보장임용을 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의료원 명예퇴직 대상 교원으로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의 2018년 2월 28일부 명예퇴직을 동의 요청드립니다.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이력내용 및 연구업적 등을 살펴보니 임용 동의(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 임용 및 명예퇴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전자공학과	Ibrahim Moh Alsofyani	조교수 (비정년트랙 연구중점교원)	2018.3.1 ~ 2020.2.29 (2년)

- 이상 본교 1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사이버보안학과	김강석	부교수 (비정년트랙)
	문화콘텐츠학과	YAN KUI	조교수 (비정년트랙)
	교육대학원	유미현	대우부교수
	대학원 NCW학과	홍성표	대우교수
	대학원 NCW학과	정찬기	대우교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장경식	대우부교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 수	대우부교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이병목	대우부교수

- 이상 본교 8명 -

다. 승진 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문석	교수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미디어학과	이운진	교수
	사이버보안학과	곽 진	교수
	화학과	김유권	교수
	경영학과	장병운	교수
	사학과	박구병	교수
	약학과	윤태종	교수
	교육대학원	고호경	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최권영	부교수
	전자공학과	양희석	부교수
	물리학과	이상운	부교수
	경영학과	김상일	부교수
	문화콘텐츠학과	장예빛	부교수
	경제학과	김태봉	부교수
	약학과	신수영	부교수
	다산학부대학	홍성연	부교수
	대학원에너지시스템학과	박희준	부교수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해상	부교수
	정형외과학교실	정남수	부교수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안과학교실	이기황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영상의학교실	최진욱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의학유전학과	손영배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간호학과	부선주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간호학과	배선행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	2018.3.1 ~ 정년
	미생물학교실	권명희	교수	2018.3.1 ~ 정년
	순환기내과학교실	임홍석	교수	2018.3.1 ~ 정년
	신경과학교실	홍지만	교수	2018.3.1 ~ 정년
	외과학교실	오승엽	교수	2018.3.1 ~ 정년
	신경외과학교실	안영환	교수	2018.3.1 ~ 정년
	마취통증의학교실	채윤정	교수	2018.3.1 ~ 정년
	영상의학교실	곽규성	교수	2018.3.1 ~ 정년
	핵의학과학교실	윤준기	교수	2018.3.1 ~ 정년
	병리학교실	김장희	교수	2018.3.1 ~ 정년

- 이상 본교 18명, 의료원 17명 -

라. 명예퇴직

소 속	성 명	직 급	명예퇴직일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	2018.2.28.

- 이상 의료원 1명 -

제 15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연구정보처장 최정주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을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학부총장 직속기구인 창업지원단을 총장직속기구로 직제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2018.3.1.부 법과대학 폐지 예정으로 대학장 보직으로의 교무위원 임명이 불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당연직 교무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사업명칭 변경 및 변경 명칭 활용 안내에 따라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p>1. 일반대학원 : 대학원</p> <p>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p> <p>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p>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p> <p>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p> <p>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u>대학 창조일자리센터</u>,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p> <p>4. <삭 제></p>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p> <p>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p> <p>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u>대학 일자리센터</u>,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p> <p>4. <삭 제></p> <p>⑥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신상행

이사이영현

현행	개정
<p>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p> <p>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교육센터</p> <p>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p> <p>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p> <p>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p> <p>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p> <p>7. 학생처 : 아주상담·지원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p> <p>8. 총무처 : 예비군연대</p> <p>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1.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3. <삭제></p> <p>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u>브랜드전략실, 비서실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u>을 둔다.</p> <p>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u>프로젝트지원팀 및 창업지원단</u>을 둔다.</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및 창업지원단</u>을 둔다.</p> <p>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u>프로젝트지원팀</u>을 둔다.</p> <p>⑩ (현행과 같음)</p>
<p>제10조 (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p>제10조 (부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2. <삭제> 3. 평생교육원 : 교학팀 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 5. <u>대학창조일자리센터</u> : 운영팀 6. <삭제 2016.8.26></p> <p>③ 부속기관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부속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2. <삭제> 3. 평생교육원 : 교학팀 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 5. <u>대학일자리센터</u> : 운영팀 6. <삭제 2016.8.26></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② 브랜드전략실은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외협력팀을 둔다. ④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정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삭제> ⑥ <삭제> <u>(신설)</u></p> <p>⑦ 브랜드전략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전략실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⑧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u></p> <p>⑧ 브랜드전략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전략실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p>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u>(신설)</u></p> <p><u>(신설)</u></p> <p>⑨ 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삭제></p> <p><u>(신설)</u></p> <p><u>(신설)</u></p>	<p>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⑩ <u>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⑪ <u>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⑫ 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⑬ <삭제></p> <p>⑭ <u>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⑮ <u>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p> <p>② <u>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u></p> <p>③ 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u>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⑤ <u>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u></p>	<p>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p> <p>② <삭제></p> <p>③ 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삭제></p> <p>⑤ <삭제></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신상협

이사장 이영현

현행	개정
<p>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⑥ <u>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⑦ <u>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⑥ <삭제></p> <p>⑦ <삭제></p>
<p>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u>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u>대학원장, 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u></p>

제 16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교원 채용계획은 당초 27명으로 이사회 승인받았으나, 퇴직예정 TO를 조기 임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운영 정상화 및 우수인력을 선점하고자 당초 계획대비 2명이 증가한 29명으로 변경 승인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신상협

이사장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채용 계획(안)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7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연구정보처장 최정주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대학교 2차 추경(안)은 예산 규모가 1차 추경 대비 196.7억 증가한 2,8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등록금수입이 1차 추경대비 학부 15.8억, 대학원 12.9억, 특수대학원 9억 등 약 39억이 감소되었고 기부금수입도 약 5억이 감소한바 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2018학년도에는 본예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추경 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단위 : 억원)

구 분	2차 추경		증(감)		1차 추경(안)	
	금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금액	구성비
수 입	2,875.0	100.0%	196.7	7.3%	2,678.3	100.0%
운 영 수 입	2,373.5	82.6%	-24.2	-1.0%	2,397.7	89.5%
기 타 자 산 수 입	2.4	0.1%	0.8	48.5%	1.6	0.1%
기 금 인 출	399.6	13.9%	219.9	122.4%	179.7	6.7%
고 정 부 채 입	0.5	0.0%	0.2	66.7%	0.3	0.0%
전 기 이 율	99.0	3.4%	-	-	99.0	3.7%
지 출	2,875.0	100.0%	196.7	7.3%	2,678.3	100.0%
운 영 지 출	2,282.8	79.4%	-52.8	-2.3%	2,335.6	87.2%
자 산 취 득	167.8	5.8%	-39.1	-18.9%	206.9	7.7%
기 금 적 립	350.7	12.2%	285.3	436.4%	65.4	2.4%
기 타 자 산 지 출	1.8	0.1%	-0.6	-24.8%	2.4	0.1%
부 채 상 환	18.7	0.6%	-3.0	-13.9%	21.7	0.8%
예 비 비	2.0	0.1%	-1.8	-46.8%	3.8	0.1%
미사용 차기이월	51.2	1.8%	8.7	20.4%	42.5	1.6%

제 18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받의.

연구정보처장 최정주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처장이 자금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대학교 2018학년도 본예산(안)은 총 수입 및 지출이 2,604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등록금수입이 학부입학금 16% 인하, 학부정원 4% 감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재직자과정, 외국인유학생 증가 등을 통하여 19.2억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2017학년도 2차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향후 추가적인 자금 감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추가 비용절감 등 위기 대응 전략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감사님 의견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적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18학년도		증(감)		2017학년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금액	구성비
수입	2,603.8	100.0%	-271.2	-9.4%	2,875.0	100.0%
운영수입	2,409.4	92.5%	35.9	1.5%	2,373.5	82.6%
기타자산수입	0.6	0.0%	-1.8	-74.7%	2.4	0.1%
기금인출	140.1	5.4%	-259.5	-64.9%	399.6	13.9%
고정부채입금	2.5	0.1%	2.0	400.0%	0.5	0.0%
전기이월	51.2	2.0%	-47.8	-48.3%	99.0	3.4%
지출	2,603.8	100.0%	-271.2	-9.4%	2,875.0	100.0%
운영지출	2,317.2	89.0%	34.4	1.5%	2,282.8	79.4%
자산취득	146.3	5.6%	-21.5	-12.8%	167.8	5.8%
기금적립	69.3	2.7%	-281.4	-80.2%	350.7	12.2%
기타자산지출	4.2	0.2%	2.4	131.9%	1.8	0.1%
부채상환	14.5	0.5%	-4.2	-22.3%	18.7	0.6%
예비비	2.0	0.1%	-	-	2.0	0.1%
미사용 차기이월	50.3	1.9%	-0.9	-1.8%	51.2	1.8%

제 19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려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20 호 아주대학교 보직 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의학과 유희석 교수, 기획처장에 미디어학과 최정주 교수, 총무처장 겸 국제협력처장에 e-비즈니스학과 임재익 교수, 연구정보처장에 전자공학과 오성근 교수, 약학대학장에 이범진 교수, 대학원장에 생명과학과 김혜선 교수, 공학대학원장에 기계공학과 최운호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균 교수, IT융합대학원장에 전자공학과 김영길 교수, 보건대학원장에 의학과 전기홍 교수, 임상치의학대학원장에 의학과 김영호 교수, 진료부원장에 의학과 임상현 교수, 교육인재개발부원장에 의학과 이광재 교수를 2018년 3월 1일부로, 산학부총장에 교통시스템공학과 오영태 교수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취업심사 승인일로부터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 및 의료원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21 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 이영현 : 본 법인의 신축 중인 중증재활요양병원의 건축비용 총 73,211백만원 중 11,765백만원을 3차에 걸쳐 기금을 처분하여 건축비로 대체하기로 하여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제321차 이사회에서 1차로 4,417백만원의 기금 처분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차로 4,115백만원의 기금을 처분하여 건축비로 대체 취득 하고자 승인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기금 처분 승인 내용

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상 기금현황 (2차)

(단위 : 원)

기 관 명	계좌번호	예 치 일	만 기 일 (이자율)	금 액
씨티은행	321-17670-317-01	2017. 8. 23.	2018. 5. 23. (1.70%)	4,115,000,000
			실 처분 예정액	4,115,000,000

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예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 (2차)

▶ 처분 예정 금액(2차) : 4,115,000,000원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기금→건물)

※ 대우학원 기금 변동

(단위 : 백만원)

구분	처분 전 (2015.9.30)	1차 처분 (2016~7년)	2차 처분 (2018년)	3차 처분 (2019년)
기금 처분		4,417	4,115	3,233
처분 후 기금 잔액	27,629	23,212	19,097	15,864

주) 기금(11,765백만원) 및 기채(47,061백만원), 운영비(6,885백만원)를 신축건물(65,711백만원)로 대체취득.

제 22 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및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추경예산(안)의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경예산(안)은 운영수지가 56.6억으로 1차 추경 대비 7.8억이 증가하였으며 자금수지는 중증재활요양병원 공사 지연으로 기금인출 및 기채가 미실행되어 1차 추경 대비 8.2억이 감소하였음에도 약 27.3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추경예산(안)은 2017학년도 추정 실적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운영수지가 0.4억으로 1차 추경 대비 0.7억 감소하였으나 자금수지는 △0.3억으로 1차 추경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문 길 주 : 추경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 입			과 목	지 출		
	2차추경 (A)	증감 (A-B)	1차추경 (B)		2차추경 (A)	증감 (A-B)	1차추경 (B)
전 입 금 수 입	14,535	△432	14,967	보 수	776	3	773
기 부 금 수 입	1,500	200	1,300	관 리 운 영 비	1,176	△616	1,792
예 금 이 자 수 입	570	-	570	지 급 이 자	398	-	398
수 익 재 산 수 입	1,925	△20	1,945	법 정 부 담 전 출 금	7,646	150	7,496
잡 수 입	1	-	1	경 상 비 전 출 금	2,679	△562	3,241
운영수입 (1)	18,531	△252	18,783	예 비 비 등	201	-	201
원금보존기금인출	-	△4,115	4,115	운영지출 (4)	12,876	△1,025	13,901
				원금보존기금적립	3,000	-	3,00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고정 자산 매각	3,017	-	3,017	임의기금적립	85	-	85
장기차입금차입	9,820	△6,640	16,460	고정 자산 매입	11,426	△9,160	20,586
임대보증금수입	245	-	245	장기차입금상환	1,090	-	1,090
				임대보증금환급	405	-	405
자산부채수입(2)	13,082	△10,755	23,837	자산부채지출(5)	16,006	△9,160	25,166
전기이월자금(3)	14,157	-	14,157	차기이월자금(6)	16,888	△822	17,710
합계(1+2+3)	45,770	△11,007	56,777	합계(4+5+6)	45,770	△11,007	56,777

▶ 법인 수익사업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 입			과 목	지 출		
	2차추경 (A)	증감 (A-B)	1차추경 (B)		2차추경 (A)	증감 (A-B)	1차추경 (B)
장례식장운영수입	4,597	△247	4,844	보 수	696	△ 100	796
임 대 료 수 입	3,392	△150	3,542	관 리 운 영 비	1,176	△172	1,348
관 리 비 수 입	17		17	장 례 식 장 운 영 비	598	44	554
예 금 이 자 수 입	1		1	예 비 비		△100	100
잡 수 입	2		2	잡 손 실	2		2
				전 출 금	5,500		5,500
운영수입(1)	8,009	△397	8,406	운영지출(4)	7,972	△328	8,300
				고 정 부 채 상 환	37		37
				고 정 자 산 매 입	35	△ 65	100
자산부채수입(2)				자산부채지출(5)	72	△ 65	137
전기이월자금(3)	337		337	차기이월자금(6)	302	△ 4	306
합계(1+2+3)	8,346	△397	8,743	합계(4+5+6)	8,346	△397	8,743

제 23 호 2018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2018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자금예산(안)의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법인일반업무회계 예산(안)은 운영수지가 49.2억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장 본예산(안)은 2017학년도 장례식장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월별, 분기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 미달성시 추경 예산을 통하여 비용을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8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 목	2018 (A)	증감 (A-B)	2017 (B)	과 목	2018 (A)	증감 (A-B)	2017 (B)
전입금수입	16,429	1,894	14,535	보 수	797	21	776
기부금수입	1,500	-	1,500	관리운영비	1,274	98	1,176
예금이자수입	770	200	570	지 급 이 자	1,032	634	398
수익재산수입	2,000	75	1,925	법정부담전출금	8,716	1,070	7,646
잡 수 입	5	4	1	정상비전출금	3,070	391	2,679
				예 비 비 등	201	-	201
운영수입(1)	20,704	2,173	18,531	운영지출(4)	15,090	2,214	12,876
원금보존기금인출	4,115	4,115	-	원금보존기금적립	-	△3,000	3,000
투자자산수입	1	1	-	임의기금적립	85	-	85
고정자산매각	-	△3,017	3,017	고정자산매입	35,841	24,415	11,426
장기차입금차입	30,350	20,530	9,820	장기차입금상환	1,092	2	1,090
임대보증금수입	285	40	245	임대보증금환급	285	△120	405
자산부채수입(2)	34,751	21,669	13,082	자산부채지출(5)	37,303	21,297	16,006
전기이월자금(3)	16,888	2,731	14,157	차기이월자금(6)	19,950	3,062	16,888
합계(1+2+3)	72,343	26,573	45,770	합계(4+5+6)	72,343	26,573	45,770

▶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 목	2018 (A)	증감 (A-B)	2017 (B)	과 목	2018 (A)	증감 (A-B)	2017 (B)
예금이자수입	1	-	1	보 수	737	41	696
장례식장운영수입	4,965	368	4,597	관리운영비	1,347	171	1,176
임대료수입	3,668	276	3,392	장례식장운영비	606	8	598
관리비수입	17	-	17	예 비 비	50	50	
잡 수 입	2	-	2	잡 손 실	2	-	2
				전 출 금	6,000	500	5,500
운영수입(1)	8,653	644	8,009	운영지출(4)	8,742	770	7,972
				고정부채상환	37	-	37
				집기비품매입	100	65	35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형

이사 이영현

자산부채수입(2)	-	-	-	자산부채지출(5)	137	65	72
전기이월자금(3)	302	△35	337	차기이월자금(6)	76	△226	302
합계(1+2+3)	8,955	609	8,346	합계(4+5+6)	8,955	609	8,346

제 24 호 2018학년도 상근임원 보수책정 승인(안)

(2018학년도 상근임원 보수 책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33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이 저와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33차 이사회회 폐 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8 년 2 월 6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김 성 진	김 성 진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 사	김 성	김 성
이 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최 홍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문 휘 창	문 휘 창
감 사	배 홍 기	배 홍 기